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25
----------	--------

제출년월일 : 2024. 9.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용품 지원 신설, 사망위로금 관련 조문 정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및 보훈대상자 급식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확대(제3조 제7호)
- 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신설 (제6조 제11호)
- 다. 국가보훈대상자 급식지원 규정 신설 (제6조 제2~3항)
- 라. 사망위로금 관련 조문 정비(금액 삭제) (제7조 제2항)
- 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신설 (제10조에 2)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4. 8. 29. ~ 9. 18.(20일) ▶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제6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급식 지원에 따른 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급식 지원대상은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조제6호”를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제7호”를 “제3조제8호”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②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b>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b>				처리기간
				30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마포구 전입일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p>「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margin-right: 20px;">년</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월</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일</span>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p> <p><b>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b></p>				
<p>&lt;구비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빙서류(보훈부 의뢰) 1부</li> <li>2.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li>3. 주민등록 초본 1부.</li> <li>4. 통장사본 1부.</li> </ol>				수수료
				없 음
<p>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p> <p>1. ~ 6. (생략)</p> <p><u>&lt;신 설&gt;</u></p> <p>7. (생략)</p> <p>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lt;신 설&gt;</u></p> <p>11. (생략)</p> <p><u>&lt;신 설&gt;</u></p>	<p>제3조(지원대상)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에 적용을 받는 사람</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6조(지원사업 등) ① ----- ----- <u>각 호의 사업</u>-----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 <u>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급식 지원에 따른 관련 경비를 예산의</u></p>

<신 설>

제7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생략)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④ (생략)

제9조(위문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급식 지원대상은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 ①  
----- 제7호-----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문금) -----  
-----

공자에게는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제6호에 따른 단체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제3조제7호의 참전유공자 중 지급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 제3조-----  
-----.

제10조(참전명예수당) ① -----  
제3조제8호-----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②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b>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b>				처리 기간 30일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마포구 전입일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p>「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b></p>				
<p>&lt;구비서류&gt;</p> <p>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빙서류 (보훈부 의뢰) 1부</p> <p>2. 가족관계증명서 1부.</p> <p>3. 주민등록 초본 1부.</p> <p>4. 통장사본 1부.</p>				수수료  없 음
<p>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 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b>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b>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 장례용품 지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

- (1) 제3조(지원대상) 제7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2) 제6조(예산지원) 제11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 (3) 제10조의 2(배우자 복지수당)

###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5. 1. ~ 2029. 12. (60개월)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구비	-	-	-	-	-	-
	소계(a)	-	-	-	-	-	-
세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 · 명절위로금 지급	42,300	42,300	42,300	42,300	42,300	211,500
	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신설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배우자 수당 지급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소계(b)	198,300	198,300	198,300	198,300	198,300	991,500
	□ 총 비용(a-b)	-198,300	-198,300	-198,300	-198,300	-198,300	-991,500

### 4. 재원조달 방안

가. 지방재원(구비) 지출

###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김민음 (☎ 3153-8807)